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이승미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893호

다. 제출일자 : 2019. 8. 7.

라. 회부일자 : 2019. 8. 13.

2. 제안사유

- 현행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이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중복적으로 실시되는 등의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운영자는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운영·관리자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점검을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변경함(안 제10조)

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변경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8. 19 ~ 2019. 8. 26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원안동의

- 상위법령(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 등에 대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던 사항을 「교통안전법(이하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상별로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시설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과거 ‘교통안전점검’은 교통수단·시설¹⁾ 등에 대해 교통행정기관이 전반적인 교통안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실시하고, ‘교통안전진단’ 및 ‘특별교통안전진단’의 경우 교통안전진단기관을 통해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차량”이라 한다)

나. 「해사안전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선박”이라 한다)

다.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항공기”라 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철도·궤도·항만·어항·수로·공항·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참고 : 법 개정전의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및 특별교통안전진단 개요**

구분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주체	<u>교통행정기관</u>	<u>교통안전진단기관</u>	<u>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u>
대상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일부 교통체계		
내용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전반적 실태 파악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 설치 전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 초래 위험시
활동	조사·점검 및 평가	조사·측정 및 평가	조사·측정 및 평가

- 하지만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실시주체는 상이하나 적용 대상 및 점검방법 등이 유사하여 제도 운영의 중복·혼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수단 운영자(운수 업체 등)는 ‘교통수단 안전점검’²⁾을, 교통시설 설치·관리자는 ‘교통시설 안전진단’³⁾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됨

※ **참고 : 「교통안전법」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 개편내용**

현 행		⇒	개 편	
제도명	대상자		제도명	대상자
교통안전점검	교통수단, 시설운영자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자
교통안전진단	교통시설 설치자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통시설 설치·관리자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시설운영자 (중대사고 유발자)			

- 2)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①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 ④ (생략)
- 3)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 ⑤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생략)

-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시설안전진단 시행을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 시”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34조에 “일정규모 이상 도로·철도·공항의 교통시설 설치 전” 또는 “일정 교통 시설 사용 개시 전”에도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⁴⁾, 이상의 내용도 조례 개정 후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의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시설의 설치 전에 제3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자는 해당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開始) 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